

부산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나495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나4955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20가단306521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명숙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수

변론 종결 2021. 3. 26.

판결 선고 2021. 4. 23.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20가단30652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2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8. 7. 25. 접수 제369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6. C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9. 3. 5., 이자율 연 10.28%, 지연이자율 연 19%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이 2019. 2. 15.까지의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9. 12. 30.을 기준으로 한 C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33,424,139원(대출원금 30,000,000원 + 이자 3,424,139원)이다.

나.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20. 여동생인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7. 25. 피고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36984호로 2018.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C에 대하여 3,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취득하였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피고는, C이 2011. 4. 21.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2,000만 원과 수리대금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자녀 결혼비용 마련과 생활비 조달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피고에게 이를 매도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소멸케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C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4개월도 되지 않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점,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는 C의 피고에 대한 기존채무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되는 반면, 피고의 선의에 관한 주장, 증명은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권현영

판사조윤정

판사홍준서

별지